

# 충남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2.22.]

개정 2015. 3. 12.

개정 2019. 3. 19.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생활정보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 1항. 석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3과목이상으로 실시한다.
- 2항.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 3항.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다음학기에 다시 재응시할 수 있다.
- 4항.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개정 2015.3.12. 2019.3.19.)**

1항.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TEPS 476점 이상
2. TOEIC 600점 이상
3. TOFEL(PBT) 490점 이상
4. TOFEL(CBT) 163점 이상
5. TOEFL(iBT) 57점 이상
6. 언어교육원의 모의TOEIC 600점 이상
7. 언어교육원에서 영어관련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8. TOEIC Speaking 110이상
9. OPIc IM2이상

2항.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논문 계획 및 예비 발표) 본 학과는 매학기 공개발표 및 본심사시에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석사과정에 해당되는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은 해당이 없다.

제8조(논문지도위원회) (개정 2015.3.12.)

1항.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신청 한 학기 전에 논문지도위원을 구성하도록 한다.

2항. 수료학점의 2분위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5. 3. 1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능력기준 및 논문지도위원회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

## 부 칙(2019. 3. 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2017년 입학자 포함)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 시행 당시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과별 학위청구 논문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모두 졸업한 경우 폐지한다.